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규권 의원 발의]

의안번호	2262
------	------

발의일자 : 2022. 11. 10.
발 의 자 : 장규권 의원(1명)
찬 성 자 : 고영찬 의원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 1. 13.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2022. 1. 13. 시행)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보상금 지급 조건 중 ‘직무’의 범위가 확대되는 사항을 반영하여 법령의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함(안 제1조).
나. 상위법 개정에 따라 보상금 지급 조건 중 직무 범위 변경사항을 반영함(안 제2조제1호).

구분		지방자치법
개정전	제34조제1항	지방의회의원이 <u>회기 중 직무(제61조에 따라 개최된 위원회의 직무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른 폐회 중의 공무여행을 포함한다)</u> 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와 그 상해나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현행	제42조제1항	지방의회의원이 <u>직무</u> 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와 그 상해나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2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7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다. 기 타

1) 현행 조례 : 별도 첨부

2) 신·구조문 대비표 : 별도 첨부

3) 입법예고 : 2022. 11. 11. ~ 11. 17.

4)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로 한다.

제2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이라함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를 “이라함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의원이었던 자”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었던 사람”으로, “, 자녀, 부모”를 “· 자녀 · 부모”로 한다.

제3조제1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상해, 질병”을 “상해·질병”으로 하고, 같은 호 및 제2호 중 “구의원”을 각각 “의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금천구 의회의장”을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장”으로, “경유하여”를 “경유하여 서울특별시”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구성)”을 “(심의회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위하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의회의원중”을 “의원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회의원”을 “의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u>같은 법 시행령 제39조</u>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직무"라 함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이하 "의회의원"이라 한다)이 회기(「지방자치법」 제7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개최된 위원회 포함)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p> <p>2. "의정활동비"라 함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를 말한다.</p> <p>3. "유족"이라 함은 <u>의원이었던</u></p>	<p>제1조(목적) ----- ----- <u>같은 법 시행령 제37조</u>----- ----- ----- ----- -----.</p> <p>제2조(정의) ----- ----- --.</p> <p><삭 제></p> <p>2. -----이라함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 --.</p> <p>3. ----- <u>서울특별시</u></p>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①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3. (생략)
4.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② (생략)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 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구의원 당해년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금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었던 사람

-- · 자녀 · 부모 -----.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①-----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

② (현행과 같음)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

-----.

1. -----

-- 상해 · 질병-----

----- 의원 -----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구의원 당해년도 의정 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3.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

② (생략)

제6조(보상금의 청구) ① (생략)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월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제1항 각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금천구 의회의장 (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제9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 ① 직무로 인한 사망·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천구에 심의회를 둔다.

2. -----
----- 의원 -----

3. 그 밖에 -----

-----.

② (현행과 같음)

제6조(보상금의 청구) ① (현행과 같음)

② -----

-----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회 의장----- 경유하
여 서울특별시 -----

-----.

제9조(심의회의 구성) ① -----

----- 위하여 서울특별시
-----.

②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의회의원중 1인
2. ~ 4. (생략)

③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④ (생략)

②-----

1. 의원 중 ----
2. ~ 4. (현행과 같음)

③----- 의
원-----

④ (현행과 같음)

현행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1. 13.] [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1234호, 2022. 1. 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05.26, '08.04.08., 2016.5.10., 2022.1.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5.10.>

1. “직무”라 함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이하 “의회의원”이라 한다)이 회기(「지방자치법」 제7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개최된 위원회 포함)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1.12.>
2. “의정활동비”이라 함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개정 '06.05.26, '08.04.08, 2020.3.25, 2022.1.12.>
3. “유족”이라 함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개정 2020.3.25>
4.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② 제1항 각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2의 공무원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20.3.25>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95.10.04>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구의원 당해년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개정 '06.05.26>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구의원 당해년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개정 '06.05.26>

3.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

② 제1항 각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3의 장애등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0.3.25>

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보상금의 청구)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사망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본인 또는 당해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월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제1항 각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금천구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금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이하 “심의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6.5.10.>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개정 2020.3.25>

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제9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구성) ① 직무로 인한 사망·상해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천구에 심의회를 둔다. <개정 2016.5.10.>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0.3.25>

1. 의회의원중 1인
2. 관련국장 1인
3. 의무직 공무원 1인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1인

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④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구청장이 위촉하고 해당 회의종료와 함께 해촉된다. <신설 2020.3.25>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기타 구청장이 요구한 사항

제11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3.25>

[중전 제12조에서 제11조로 이동, 2020.3.25]

제12조(심의회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 조사 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15일의 범위에서 심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20.3.25>

④ 심의회의 위원 중 의원은 본인과 관련된 안전일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20.3.25>

[중전 제13조에서 제12조로 이동, 2020.3.25]

제13조(심의회의 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금천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중전 제14조에서 제13조로 이동, 2020.3.25]

제14조(심의회의 수당) 심의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중전 제15조에서 제14조로 이동, 2020.3.2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10.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03.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05.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4조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자 또는 장애를 입은 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8.04.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865호, 2016.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094호, 2020.3.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234호, 2022.1.12.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42조(상해·사망 등의 보상) ① 지방의회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와 그 상해나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시행 2022. 1. 13.] [대통령령 제32294호, 2021. 12. 31., 타법개정]

제33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 3. (생략)

제37조(지방의회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나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게 되면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나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시·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2년분 상당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시·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1년분 상당액

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에 따른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지와 그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소속으로 지방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보상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③ 보상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도의 경우 부시장이나 부지사(부지사 또는 부시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부지사 또는 부시장으로 한다)로, 시·군·자치구의 경우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지방의회의원 1명
2.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1명
3. 의무직공무원 1명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⑤ 법 제42조에 따른 보상금은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⑥ 보상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인 위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

⑦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금의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